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29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경, 김기덕, 김원태,
김인제, 박승진, 성흠제,
유정희, 임만균, 최재란,
한신 의원(10명)

1. 제안이유

- 관광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2019년 기준 약 10.5%을 차지하는 등 상당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음.
- 이에 기후위기 등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광산업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기에 최근 3·3·7·7 정책으로 외래 관광객을 증가시키려는 서울시도 친환경 관광에 대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 나. 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 다. 지속가능 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안 제15조제1항제1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속가능 관광”이란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 · 이용을 통해 관광객에게 관광콘텐츠 ·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강화하고”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속가능 관광 육성사업

신 · 구조문대비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4. 지속가능 관광 육성사업</u>
<u>14. (생 략)</u>	<u>15. (현행 제14호와 같음)</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15조(재정지원) 제1항제14호	△	지속가능 관광 육성사업 재정지원 비용이 발생하나 추진사업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객관적 추계가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15조(재정지원)제1항제4호의 지속가능 관광 육성사업은 추계를 위한 자료조사 결과 현재 서울시 관련부서(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에서 지속가능 관광 실현 수단 중 하나인 오버투어리즘 방지¹⁾ 정책을 일부 기추진²⁾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규정은 직접적인 지속가능 관광 육성지원 단일사업의 근거로 이해되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 지속가능 관광 육성지원 단일사업의 소요비용을 추정하려면 우선 지속가능 관광의 추진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항목을 식별하는 한편, 유사·중복에 따른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관련법령의 지속가능 관광 의미 고례] 안 제2조(정의)에 지속가능 관광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법령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의 일부 내용을 고려할 경우, 오버투어리즘 방지 또한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오버투어리즘 :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들어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지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2023. 10. 31.>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기추진사업] 서울시 경제실 2025년 <지역기반 관광 활성화> : 513,736천원

⇒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 지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천원(1개 자치구 지원)을 편성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